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규 건설원전의 현장 안전규제 강화를 위하여 한울원전지역사무소에 전담인력 6급 1명을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129”를 “128”로, 일반직 계 “128”을 “127”로, 3급 또는 4급 이하 “122”를 “121”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일반직 계 및 4급 이하 “38”을 각각 “39”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129</u>		<u>128</u>	-1	
	.		.		.		
	.		.		.		
일반직	계		<u>128</u>		<u>127</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22</u>		<u>121</u>	-1	
	.		.		.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3]

지역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38</u>	<u>39</u>	+1
일반직 계	<u>38</u>	<u>39</u>	+1
4급 이하	<u>38</u>	<u>39</u>	+1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88